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사회연대 원리 실현을 위한 소고

송 윤 정*

국문초록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체계 안에 포섭한 것은 미래 노동에 대비하는 첫걸음을 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이 가지는 복잡한 계약 형태를 정리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틀 안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례 적용방식이 예술인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데는 장점이 있겠으나, 예술인들의 보험료 산정이나 실업급여의 보장수준을 임금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점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계는 예술인의 실업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의 원리를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계약 기준이 없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기초일액의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하게 기능할 때 예술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주제어: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업급여

*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율현)

목 차

- I. 서론
- II.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보장 수급권
- III. 근로자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비교
- IV.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과제
- V. 결론

I. 서론

1990년대 기업의 구조조정 등 노동의 희생이 수반되고 경제위기와 정리해고 요건완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안으로 1993. 12. 27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 7.1. 시행되었다. 제정 고용보험법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 이념의 실현보다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원리 충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애초부터 실업자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산재보험법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로 간주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근로자와 함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함으로써(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와 함께 독자적인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격을 갖는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비록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가 산재보험법보다 늦기는 하였지만, 법 체계적으로는 산재보험법보다 발전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1) 박은정,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제 주요 내용과 평가”, 『노동법학』 제79호(2021.9.), 32면.

고용보험법제를 대체로 그대로 준용하면서 특례조문을 두고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인은 9만5천명(2021.12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3만명(2021.11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²⁾ 그러나 고용보험의 대상 확대와 그 적용 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실직에 대한 생활보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권의 근거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그 개선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보장 수급권

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헌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제2항에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창작, 예술표현,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예술의 자유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예술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술창작의 자유를 가진다.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예술창작활동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술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예술품 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예술행위 또는 예술행위의 결과물 가운데 권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10.

보호한다는 의미로 표현행위의 결과를 권리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권리로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³⁾ 그러나 이 견해는 예술가를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했으므로 예술가를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보지 않았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예술가”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란 예술가의 권리의 범위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직업적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

그러나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보호받기 위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다가 2021.8.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9월 25일 시행된다.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 동안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⁵⁾ 특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

3) 정종섭, 『헌법학원론(제9판)』, 박영사, 2014, 594면.

4) 황승훈,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7. 8, 27면.

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8.31.

을 선언했으며, 직업적 권리로서 예술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 단체를 구성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 예술인의 사회보장 수급권

1) 예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에게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장급여는 이제 더 이상 국가정책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어진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활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 개인을 각종의 생활위험으로부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 내용은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소득 상실에 따른 기존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 수준은 개인의 기존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이며, 헌법 제34조의 이념과 목표는 사회보장법제를 통하여 실현된다.⁶⁾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74면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제3조 제1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2호).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3호).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최저생활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사회보장의 목적에 따라 비용부담은 사회보험의 경우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공공부조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취업지원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예술인의 근로권

헌법 제32조는 근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권에서의 근로는 종속노동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⁷⁾와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이라고 하여 종속노동에 한정시키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⁸⁾ 근로권의 보장 수준은 근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로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권리로서의 규범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와 입법을 매개할 필요 없이 국가를 구속하여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며 이를 재판상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고용보장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부각되고 고용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근로권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입법이 대부분 정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⁹⁾, 일자리 자체나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의 경제적 효과에 준하는 급부, 즉 실업수당 또는 실업부조 등도 입법 형성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대체적 권리¹⁰⁾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종속노동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¹¹⁾

3)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법론

고용보험의 배제는 공공부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된다. 예술인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범

-
- 7)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7, 신정 2판, 757면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제10판, 2017, 828-829면.
- 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제18판, 2018, 1409면 ;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2014. 3.), 77면.
- 9) 김유성, 『노동법』 1, 법문사, 19면.
- 10)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2011. 3.), 152-154면.
- 11) 실업급여를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서 도출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보장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 즉,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서 도출할 경우에는 충분한 생활보장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나,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할 경우에는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가 구현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159면 이하 참조.

위에 포함시키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개념으로 포섭하는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법,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방법¹²⁾, 경제법 등으로 보호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의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시도¹³⁾가 있었으나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확대되고,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설정의 어려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이 무산되었다가 결국 예술인의 특례를 규정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노동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특히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특례 적용은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체계에 포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현행 고용보험법 체계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가운데도 적용 제외되는 집단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 대상을 제외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가구 내 고용활동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취약 계층이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은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2) 비자발적 이직,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4) 구직 노력을 할 것의 네 가지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용직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2) 노병호, 성재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2017.10), 783면.

13) 노병호, 성재봉, 앞의 글, 779면.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최소한 1년의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그 동안 법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 근로자, 적용제외 임금 근로자), 실질적 사각지대(미가입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완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예술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는 ‘근로자’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III. 근로자와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비교

예술인 계약은 3자 계약, 팀 단위의 계약, 도급계약 등 그 형태가 복잡하고 특정 사업주와 지속적인 계약을 맺기 보다는 동시에 복수의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이 있다.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문제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⁴⁾ 소득의 불안정성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예술인 계약의 특징과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을 근로자에 대한 특례 방식으로 적용한다. 아래에서는 근로자 적용방식과 비교하면서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 기준의 적용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제77조의2 제1

14) 문화체육관광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021. 12

향).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의 개념 요소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예술인의 종사 형태의 대부분이 프리랜서라는 특성을 반영한 점,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에 한정하지 않고 실적이 없더라도 예술계약을 체결한 신규 진입자를 포함하였다는 점, 예술계 내부의 장르별 특징에 관계없이 모든 장르의 예술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축소를 염두에 둔 입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기준으로서 50만 원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제2항 제2호).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여부가 정해진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의 목적(생업 여부)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과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개편하고, 임금, 수수료 등 외형적 보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받는 종사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과세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과세소득 기준으로의 개편은 상용, 일용, 특고 등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의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여 보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형태나 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범위를 정하였다는 점은 고용보험의 확대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피보험자격 복수취득 허용

근로자와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된다. 예술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인정하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뿐 아니라,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도 인정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5항). 하나의 사용자에게 월평균소득 50만 원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예술인의 계약형태상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수의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섭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복수취득을 허용한다.

3. 수급 요건의 완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구직 노력을 할 것의 네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실업급여 수준은 구직급여 기초일액(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에도 위의 근로자의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¹⁵⁾이 요구된다(고용보

15)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복수취득 인정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지위가 중복되었을 때는 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04조의8, 그리고 제104조의 14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협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또한 근로자와 달리 ‘일정한 기준에 따른 소득감소¹⁶⁾’에 따른 이직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3호). 이 밖에 적어도 예술인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지급받게 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단기예술인은 피보험기간을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한다.

4. 보험료 부담의 완화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보수액에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공제율 20%)에 대하여 1.4%(근로자의 경우 1.6%)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월 80만 원의 하한액을 적용하여 추후 신고한 보수액와 매월 납부한 보수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별도의 정산절차는 필요 없다.

합하여 피보험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즉,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 비율에서 기준기간 대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을 다른 고용형태(예, 근로자)로서의 기여요건 비율에 곱하여 나온 기간 보다 다른 고용형태로서 충족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큰 경우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6)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제104조의6제1항)를 말한다.

IV.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과제

1. 구직급여일액 수준 상향

예술인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최저기초일액(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술인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 미만이면 기준보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한다. 예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보수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16,000원이 된다.¹⁷⁾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으로 최저구직급여액이 60,120원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액을 받게 된다. 결국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되겠지만 예술인은 월 80만 원인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이 된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근로자와 예술인이 다르지 않다. 근로자와 예술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저수준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수준이 정해져서는 안 되고, 예술인의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최저기초일액 수준은 예술인의 실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실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인 만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한다는 ‘필요에 의한 급여’라는 원칙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17) 기준보수가 월 80만 원이므로 기초일액은 약 26,666원(80만 원÷3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은 약 16,000원(26,666원×60%)이 된다. 만약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 약 1,920,000원(16,000원×120일)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 부분실업 인정제도

현행 고용보험제도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 복수취득이 가능하지만, 복수취득한 피보험자격 전체가 상실될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즉, 복수취득한 피보험자격 중 일부만을 상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3개의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무제공자가 2개의 일자리를 상실하였다도 1개의 일자리에서 여전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활동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이 변동된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술인 종사, 단기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득 기간 중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최저임금 일액의 20% 예정) 이하이면 해당 일의 구직급여 일액 전액을 지급하나, 고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피보험자격의 복수취득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분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유지하고 있던 자리에서도 실업을 선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실업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부분실업을 인정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부합한다.

3. 예술인 범위의 확대

예술인 복지법이 그 적용대상을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

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적이 없는 예술계약을 체결한 신규 예술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체결을 통해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에 한정하고 있다. 저작권료로 생활하고자 하는 자영예술인도 사회보험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¹⁸⁾. 예술인 고용보험이 소득기준으로 재편된 만큼 타인을 위한 노무제공 형태의 예술 활동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예술인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상의 위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자영예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섭하는 만큼 자영예술인도 포함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자영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재정의 확보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4. 사용자 범위의 확대

예술인에 대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 KSVG¹⁹⁾를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예술가를 ‘고용’하거나 예술가의 ‘노동을 제공받는’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예술인의 예술작품 및 저술가의 저작·출판물을 ‘이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기업, 공공단체, 기관, 사단법인 등은 예술가사회보험법상 사용자로서 사회보험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예술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면 자영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섭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보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을 낮히고 가입자를 늘려 저부

18) 프랑스의 AGESEA는 문학, 드라마, 음악, 시청각예술, 사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주관하며, 저작권료 총액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규석,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문체부, 예술정책연구보고서, 156면.

19) 김수갑,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제14호(2013.12), 107면.

담-저수혜에서 벗어나도록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재정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그 고용관계의 양상이 달라졌다. 예술인이 사회보험 정책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 사회연대의 물질 대상이 포괄적이고 사회연대의 인적대상이 넓을수록 사회보험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 요구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5. 지급기간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30일-210일이었으나, 1998년 60일-210일로 변경되었고 2000년부터 90일-240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근로자와 예술인 모두 120-270일로 동일하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 상향조정은 적직 미선택으로 인한 실업의 반복 가능성을 낮추어 결국 실업기금과 실업률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²⁰⁾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은 빈곤 상태로의 유입과 탈출이 모두 활발하여 빈곤 지속기간이 짧다는 연구들은 빈번한 실업 경험과 실업기간의 소득 감소가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기간 소득보장제도의 미비와 적절한 고용서비스의 부재는 근로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제의든 수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신속하게 취업하지만 적절한 일자리에 매칭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업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²¹⁾ 재정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는다면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급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6, 24면.

21) 이병희,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27-28면.

여의 임금대체율, 즉 지급액을 높이는 것보다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²²⁾ 특히 예술인의 경우 창작준비기간이 용역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창작활동이 다시 실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기간 확대가 절실하다.

6.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은 인적 기준과 보험료의 납부 및 보험가입 기간 등의 기여요건²³⁾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 인적 기준과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설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직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²⁴⁾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단지 실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제도의 기능유지에 부적당하고, 구직급여는 공공부조가 아닌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므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경우는 이른바 보험법상 면책조항²⁵⁾의 취지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발적 퇴직자의

22) 김지운, “구직급여제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16

23) 고용보험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 구직급여 기여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12개월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는 18개월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24)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직업소개나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25)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창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생존 조건을 겨우 넘나드는 질 낮은 일자리에서 그 이상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자발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한 시간에 대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인정되어야 한다.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직장으로의 취업이 확실시되는 경우의 이직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준비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고용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근로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논거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더라도 이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취업에 실패한 자는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의 보험료 기여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업자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7. 새로운 정책적 접근법

반복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 속에 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

26) 양승엽, 「프랑스의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개정 내용」,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외 2018년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18, 109면.

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 실업에 대한 기본적 대응체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²⁷⁾ 등 적용대상의 확대만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저작권료로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예술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공공부조의 수급자격이 없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법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실업부조를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생계보장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여 급여수준과 수급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반면, 일본에서 실업부조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실업부조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입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2016.8.19.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10)이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자산조사 후 최저임금법에 연동한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27) 양승엽, “자영업자등의 고용보험적용 대상 확대 방안-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461면. 사회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가입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발적 폐업 등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법안은 실업부조를 고용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 파악하고 고용보험의 행정 체계 내에서 실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실업부조가 사회보험의 연대 원리에 따른 기여금 기반이 아니므로, 일반회계 부담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적극적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안전망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까지 병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향한다. 즉 실업부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라고 하는 3층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⁸⁾

V. 결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의 체계 안에 포섭한 것은 미래의 노동에 대비하는 첫걸음을 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노동시장에서 복잡한 계약형태를 정리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종속노동의 근로관계가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틀 안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례 적용방식이 예술인의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및 보장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은 예술인의 현실적인 실업 상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의 원리를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계약에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에 대한 계약이 없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28) 김근주,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외 2018년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18, 59면.

한다면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기초일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분 실업급여제도와 자영업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도 필요하다. 고용보험이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하게 기능할 때 예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만성적 실업과 불완전 고용, 정신적 노동 역시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미래의 노동형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보장하는 전통적 고용관계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보험의 틀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보충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새로운 틀을 짤 수도 있다. 실업부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3단계 안전망 구성을 목표로 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사회보장법 제도 안에 한국형 실업부조법의 특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으로 대변되는 미래 노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의 중단이 발생하면 실업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인적단위’로 개편하여 자영업자, 초단시간근로자, 자영업예술인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언제라도 실업에 빠질 수 있고, 사실상 만성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빈곤층의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복기·박지순·전광석, 『사회보장법』, 제6판, 신조사, 2020.
-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제18판, 2018
- 김복기,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한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2018
- 정종섭, 『헌법학원론(제9판)』, 박영사, 2014
- 박은정,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제 주요 내용과 평가”, 『노동법학』 제79호(2021.9.)
- 김수갑,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제14호(2013.12)
-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2011. 3.), 152-154면.
- 노병호·성재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2017.10)
- 황승훈,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7. 8
- 이규석,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문체부, 예술정책연구보고서, 2007
- 김근주,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외 2018년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18
- 양승엽, “프랑스의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개정 내용”,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외 2018년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18
- 양승엽, “자영업자등의 고용보험적용 대상 확대 방안-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 이병희,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 장승혁, “사회보험과 사회연대-관례로 본 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제3회 사회권관사캠프 제4차 세미나, 2022.1.
- 고용노동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2020.12.
- 문체부, 2021 예술인 실태조사, 2021. 12.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6

<Abstract>

A Study on unemployment benefit for the artist in the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Song Yoonjung*

The inclusion of artists and labor provider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can be seen as the first step toward preparing for future labor. There are positive aspects in the sense that it has expanded its application to various employment types other than traditional workers, and organized the complex contract types of artists in the labor market to some extent.

It has, however, left much to be desired, because it has been revised to apply special cases clauses within the framework of wage workers. Although the special cases application may have an advantage in captur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mployment form of artists, it seems that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is neglected as fairness to wage workers is brought in when setting artists' insurance premiums or unemployment benefits. Such a design is not sufficient to serve as an employment safety net for artists' unemployment. This is the point we need to reflect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ccording to ability and benefit according to need'.

In the artist's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 contract, there is no contract standard for minimum remuneration such as the minimum wage, and it is very difficult to sanction unfair contracts. Considering these

* Certified Labor Affairs Consultant(Yulhyun Labor Law Firm)

specificities of the artists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minimum basic daily amount of unemployment benefit for the artist at the same level as wage workers. Freedom of artistic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when employment insurance functions sufficiently to serve as a social and employment safety net for artists.

Key Words: artist, employment insurance, social insurance,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unemployment benefits